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

직무교육기관 [ ]등록 [ ]변경등록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교육기관명(상호)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소재지	전화번호

직무교육 종류 (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작성)	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안전관리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산업안전일반 □ 제조업 분야 □ 건설업 분야 □ 기타 서비스 분야 □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보건관리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산업보건일반 □ 산업위생 □ 산업간호 □ 직업환경의학 □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(□보수) □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(□신규, □보수) □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(□신규, □보수)
변경사항 (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)	변경 전
	변경 후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

첨부서류	등록신청하는 경우	1.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)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.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·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)와 시설·장비 명세서 4.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	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	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등록증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. 법인등기사항 증명서(법인만 해당한다) 3. 사업자등록증(개인만 해당한다)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공지사항

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지방고용노동청		지방고용노동청		지방고용노동청장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